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4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민전·안철수·서천호

강대식 • 이성권 • 진종오

이종배 · 강선영 · 나경원

조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(一事不再議)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·3월·4월·5월·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2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 중 "같은 회기 중에"를 "부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사부재의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 또는 제출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	제92조(일사부재의)
은 <u>같은 회기 중에</u> 다시 발의	<u>부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</u>
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	아니하면